

# 忠清北道決算檢查委員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2. 4. 13.

內務委員會

### 1. 審査經過

가. 提案者 : 李 炳 斗 議員外 7名

나. 提案日字 및 回附日字

· 提案日字 : 1992年 3 月 12 日

· 回附日字 : 1992年 3 月 13 日

다. 上程日字 : 第 77回 臨時會

· 第 1次 內務委員會 ( 1992. 4. 9 ) 上程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

### 2. 提案說明 要旨

( 提案說明者 : 李 炳 斗 議員 )

가. 提案理由

- (1) 地方自治法 第125條 (決算)에 依하여 實施하는 決算檢查를 計算錯誤, 支出命令違背與否, 適法한 執行與否等 仔細하고도 客觀性있게 審査하기 爲하여 決算檢查委員 選任方法 및 節次를 改正하고자 함.

(2) 現行 決算檢査委員 選任方法은 被檢査機關의 長이 2倍數로 推薦한 者 中에서 道議會가 選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公正性을 沮害할 憂慮가 있어 道議會가 自律的으로 決算檢査委員을 選任하고 檢査 期間中 支給하는 日費를 現實化 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가 決算檢査委員 5人中 地方議會 議員이 아닌 決算檢査 委員은 "當해 地方自治團體 長의 推薦에 의하여" 를 "道議會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 承認을 얻어 選任" 한다 (第 3條 1項)

나 委員會의 日費 또는 旅費中 日費 20,000원 을 50,000원으로 한다 (第 13條)

###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鄭 天 憲)

1. 地方自治法 第125條(決算)에 依하여 實施하는 決算檢査는 豫算의 適法한 執行與否에 對하여 仔細하고도 客觀性있게 審査하기 爲함과 地域住民에게 地方財政運用에 對한 正當한 評價를 받을수 있도록 決算檢査의 公正성과 正確性을 期하고 決算檢査의 效率的인 推進을 하기 爲함에 있음.

3. 李炳斗 議員外7人이 提案한 忠淸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4. 質疑및答辯要旨

없음

5. 討論要旨

第77回 忠淸北道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1992. 4. 9)에서 忠淸北道 決算檢査委員 選任및運營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의 決算檢査委員 選任 方法에 對하여 議員發議案과 知事提出件의 2個案을 놓고 討論한 結果 知事提出 案에 對하여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고 李炳斗議員外 7人이 發議한 案件에 對하여 檢討키로 하고 議員發議案 (第3條)外 忠淸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 條例 ('88. 5. 14)에 對한 逐條審議한 結果를 本會議에 上程키로 議決

6. 修正案 要旨

제 2 조 (의원의 정수)

의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의원의 정수는 도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제 3 조 (선임방법및 절차)

①항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 의회에서 선임한다

②항을 삭제

③항을 ②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④항을 ③항으로

⑤항을 ④항으로

제 5 조 (검임금지및 결격)

③항을 삭제

제 6 조 (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면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로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를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로

제 7 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②항 같음한다 를 같음할수 있다 로

7. 少數意見要旨

없 음

8. 其他必要한 事項

없 음

9. 審査報告書 添附書類

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줄례증개정조례안

나. 수정안 조문대비표